

울산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가단1201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조

담당변호사 최상무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변 론 종 결 2022. 5. 11.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5.부터 2022. 7. 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20. 7. 30.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 명의의 C은행 가상계좌로 32,8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다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3, 4, 5, 9, 14, 1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의 거래처인 D의 담당자가 지정하는 입금자 명의로 위 돈을 입금 받은 후 통상적인 거래 방식에 따라 위 D의 선수금을 받은 것으로 처리한 사실, 이후 위 담당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선수금에 해당하는 물건을 위 담당자가 요구하는 곳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돈을 입금받은 것은 위와 같은 거래관계에 기한 것이므로 아무런 원인없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고의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피해금의 입금자가 D이 아니라 원고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소홀히 하여 물품을 발송함에 따라 원고의 손해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과실에 의해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 1) 원고의 피해금이 이체된 피고의 C은행 계좌가 2020. 7. 3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 되어 그 다음날 피고에게 통지되었는데 피고의 이의제기 신청에 따라 2020. 8. 20. 그 지급정지가 해제되었다.
- 2) 원고의 피해금은 피고의 거래처인 D의 담당자가 지정한 입금자명으로 입금되었는데, 피고의 직원은 위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위 돈을 D의 선수금이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 3) D의 위 담당자는 2020. 7. 31. 해당 선수금으로 립스틱 등의 화장품을 구매하였고, 피고는 위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2020. 8. 8. 항공 화물로 위 구매물건을 발송하였다.
- 4) 원고로 하여금 D 명의로 입금하게 한 것이 실제 D 측의 직원이었는지 여부는 밝혀진 바가 없고,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D 측의 거래 코드가 사용된 경위도 밝혀진 바가 없다.
- 5) 원고의 모 E는 2020. 8. 3.경 피고에게 원고의 사기 피해금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우편과 팩스를 통해 여러차례 알리고 피해회복을 도와 달라고 호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5, 6, 7호증, 을 제1 내지 9,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아래 ① 내지 ③과 같은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거래업체인 D에 직접 연락하여 입금된 선수금이 보이스피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금이 아닌지 확인할 조리 또는 신의칙에 의한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 인정사실과 같이 막연히 통상적인 업무 처리에 따라 물건을 거래처가 지정하는 곳에 배송함으로써 위 불법행위 피해금의 회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위에서 본 조리 또는 신의칙을 위반한 과실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해자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가 선수금을 입금받았더라도 그 돈에 해당하는 물건이 출고되기 이전이라면 위 돈이 물품대금으로서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수금이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 제3 피해자의 피해금에서 비롯된 것을 알았다면 해당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입금된 돈이 물품대금에 확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② 피고는 피해자측과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입금된 선수금이 불법행위의 피해금일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으므로 거래업체에 확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선수금의 출처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③ 불법행위가 진행되는 인과관계에 포함된 사람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그 진행을 막을 수 있고, 이를 막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라면 그 인과관계의 진행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 진행을 중지시킬 관습, 조리 또는 신의칙에 의한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과실상계

원고도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전화금융사기가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의 설명만 듣고 적지 않은 돈을 이체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의 책임은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범들의 불법성과는 큰 차이가 있는 점, 피고가 불법에 관여함으로써 취한 추가적인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840,000원(= 이 사건 피해금 32,800,000원의 3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0.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2. 7.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종열